##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889

발의연월일: 2025. 4. 16.

발 의 자: 주철현·송옥주·조인철

문대림 • 위성곤 • 조계원

안호영 · 천하람 · 어기구

송기헌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운기업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 및 해운산업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 우리나라 해운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해운업,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개발사업 등을 해운항만업으로 정의하여 해운항만업 관련 투자 등을 한국해양진흥공사 업무로 규정하고있음.

한편 예선(曳船)은 무역항에 입항·출항하는 선박의 이안·접안을 지원하는 해운산업 필수 선박일 뿐만 아니라, 해양사고 발생 시 선박 의 구조, 소방활동 지원과 같이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등 그 중요성 이 매우 큰 선박임.

아울러, 도선(導船)은 해상 교통안전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로, 전 세계 주요 항만에서 필수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항만의 안전한 선박입출항을 지원하여 항만 운영 효율성과 안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해운항만업 범위에 예선업과 도선업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예선업과 도선업은 각종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운항만업 정의에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과 「선박안전법」에 따른 예선업과 도선업을 추가함으로써, 예선업과 도선업에 대한 금융·행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예선업과 도선업 발전을 통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제2조제2호라목및 마목 신설).

법률 제 호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에 라목 및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예선을 이용하여 무역항에서 예선업무를 하는 사업
- 마. 「선박안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소형선박을 이용하여 무역항에서 도선업무를 하는 사업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운항만업"이란 다음 각	2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다. (생 략)	가.~ 다.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제4		
	호에 따른 예선을 이용하		
	여 무역항에서 예선업무를		
	하는 사업		
	마.「선박안전법」 제2조제11		
	호에 따른 소형선박을 이		
	용하여 무역항에서 도선		
	업무를 하는 사업		
2의2. ~ 3. (생 략)	2의2. ~ 3. (현행과 같음)		